

#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의 안 번호	1044
-----------	------

2019년 12월 17일  
교 육 위 원 회

### I . 심사경과

1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9년 10월 10일, 노승재 의원

2. 회부일자 : 2019년 10월 22일

3. 상정일자

○ 제29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0차 교육위원회

(2019년 12월 17일 상정, 원안가결)

### II 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노승재 의원)

#### 1. 제안이유

-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봉사활동 운영과 관련하여 「학생 봉사활동 활성화 운영 계획」을 서울시교육감 지침으로 마련해 시행하고 있음.
- 따라서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 관한 근거규정을 서울시교육청조례로 정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학생 봉사활동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립학교에는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, 사립학교에는 해당 학교의 규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라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3조).
- 나. 위원회가 학생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심의할 수 있는 사항들을 규정함(안 제5조).
- 다. 위원장, 부위원장, 위원 등 위원회의 구성에 관해 규정함(안 제6조).
- 라. 회의의 소집 및 개최, 의결방법 등을 규정함(안 제9조).
- 마. 교육감은 학생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12조).

## III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김창범)

### 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조례안은 2019년 10월 10일 노승재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1044호로 발의되어 2019년 10월 2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조례안은 각급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봉사활동의 내실 있는 운영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.

### 2. 주요 검토의견

- 가. 조례 제정의 배경과 취지에 대한 의견

○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 제2조에 따르면 “자원봉사활동”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·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, 같은 법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○ 한편 지난 2018년 1월 행정안전부에서는 11개 정부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원봉사 문화 참여, 자원봉사 인프라, 자원봉사 관리와 사업, 자원봉사 연구와 평가, 자원봉사 국제교류·협력 등 5대 정책영역을 포함한 “자원봉사 진흥 제3차 국가기본계획(’18~’22)”을 발표한바 있습니다.

○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에서는 학생 진로 맞춤형 봉사, 지역사회 연계 봉사 등 다양한 활동 모델을 제시하고, 시·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의 학생 중심 봉사활동 운영과 실적관리를 통한 학생들의 자율성·책임성 확보를 위해 “학생 선택 중심의 맞춤형 봉사활동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또한 서울시교육청도 단위학교 중심의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수립,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구성·운영 등 학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“학생 봉사활동 활성화 운영 계획(민주시민교육과, 2019.2.)”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.

○ 특히, 단위학교에서 운영되는 「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로 한다)」는 학생 봉사활동 운영계획, 봉사활동 인정 기관 지정 및 인정 기준시간 조정, 예시나 기준이 없는 봉사활동 인정 여부, 지역과 연계한 봉사활동 운영 등 봉사활동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

- 그러나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의 학생 봉사활동 지침은 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있어 구성 인원을 학교 실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, 타 위원회(학업성적관리위원회, 교육과정위원회)로 하여금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기준을 학교 실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<sup>1)</sup>
- 이런 점에서 동 조례안은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원회 구성·운영에 통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봉사활동 운영의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.

#### 나.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구성체계

- 동 조례안은 총 1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, 정의 등 총칙 규정을, 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, 명칭, 기능, 구성 등 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, 안 제10조부터 12조까지는 자원봉사 교육, 협력체계 구축,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특히, 안 제5조는 위원회가 학생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학생봉사활동 계획의 수립, 지원 및 평가, 학생의 교육 및 교사의 연수, 유관 기관과의 협력, 예시나 기준이 없는 봉사활동 인정 여부 및 범위 등을 심의하도록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는바,

같은 조 제1호의 “학교 학생봉사활동 계획”과 제5호의 “예시나 기준이 없는 봉사활동의 인정 여부”는 학생 봉사활동의 실적 인정, 실적의 학생 생활기록부 기록 등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봉사활동의 중요한 사항을

---

1) “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” 구성·운영 [학생 봉사활동 활성화 운영 계획(민주시민교육과, 2019.2.)]  
 - 교감(위원장), 봉사활동 업무담당 부장(부위원장), 위원(학교장이 임명 또는 위촉)을 두며 인원은 학교 실정에 따름.  
 - 학교 실정에 따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, 교육과정위원회에 봉사활동 업무 담당교사, 봉사활동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외부 인사 등을 참여시켜 위원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음

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

서울시교육청은 단위학교의 위원회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생봉사활동의 세부적인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.

**[표1] 봉사활동 교육과정 편성·운영(봉사활동 연간 권장 시수)**

학교급		학생 봉사활동 연간 권장 시수	비고
초	1~3	5시간 이상	
	4~6	10시간 이상	
중		15시간 이상	입시총점(300점)의 4%, 학년당 4점 배정
고		20시간 이상	

○ 이 밖에 동 조례안은 전체적인 구성이나 조문 체계 면에서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 및 「자치법규 입안실무」 등에 따라 조문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있는바,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,

서울시교육청도 동 조례안의 제정에 대해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(행정관리담당관-17407, 2019.11.18.).

**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**

**V. 토론요지 : 없음.**

**VI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.**

Ⅶ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

Ⅷ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.

Ⅸ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##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내실 있는 학생 봉사활동 추진을 통해 학생이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여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체득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학교”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중 중학교·고등학교를 말한다.
2. “학생봉사활동”이란 학생이 지역사회,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.

제3조(위원회 설치) ①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 소관 공립 학교에는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사립학교에는 해당 학교의 규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라 학생 봉사활동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4조(위원회 명칭) 위원회의 학교별 명칭은 해당 학교명 다음에 위원회를 붙여 표시한다.

제5조(위원회 기능) 위원회는 학생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학교 학생봉사활동 계획의 수립

2. 학교 학생봉사활동 지원 및 평가
3. 학생봉사활동과 관련한 학생 교육 및 교사 연수
4. 유관기관과의 협력
5. 예시나 기준이 없는 봉사활동 인정 여부 및 범위
6. 그 밖에 학생봉사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6조(위원회 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해당학교 봉사활동 업무 담당 교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

④ 위원회의 위원은 학생봉사활동과 관련한 경험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(이하 "학교장"이라 한다)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**제7조(위원의 임기)**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**제8조(위원장 등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지원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
**제9조(회의)**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학기별 1회 소집하며,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② 정기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

-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
-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 안건, 일시, 장소를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.
- ⑤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⑥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, 학교 봉사활동 계획, 교육 계획에 의한 학생 봉사 프로그램 현황 등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자원봉사 교육)** 학교장은 학생 봉사활동 시행 전에 봉사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**제11조(협력체계 구축)** 학교장은 자원봉사활동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,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**제12조(재정지원)** 교육감은 학생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
**제13조(운영세칙)**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